



정책규정집

Code of Policy and Regulations

제목 Title	정관	문서번호 Doc. No.	CPR-AOA
-------------	----	------------------	---------

시행일	2023.12.1.
제정일	2023.12.1.
개정일	

[목 차]

제 1 장 총 칙	3
제 2 장 회원 및 임원	3
제 3 장 운영위원회 및 총회	5
제 4 장 사무국	6
제 5 장 회계 및 재정	6
제 6 장 보 칙	7
부 칙		

b.lab

정 관

제1장 총 칙

제1조 <명 칭>

이 단체의 명칭은 국문으로 '비랩', 영문으로 'b.lab'라고 칭한다.

제2조 <목 적>

이 단체는 다양한 언어의 성경 본문을 번역하고 그와 관련된 자료를 체계화하며 그 결과물을 대중에게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 <사 업>

이 단체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성경 번역
2. 성구사전 편찬
3. 데이터 및 검색 엔진 구축
4. 웹 및 앱 서비스
5. 도서출판
6. 저작권

제4조 <사무소의 소재지>

이 단체의 주사무소는 군산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국내, 국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.

제2장 회원 및 임원

제5조 <회원의 구분과 자격>

이 단체의 회원 종류와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① 정회원: 단체의 설립 취지와 목적에 동의하고 단체의 목적 달성을 위한 각 분야의 전문 자격 조건을 갖춘 자로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자.
- ② 준회원: 단체의 설립 취지와 목적에 동의하고 단체의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려는 자로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자.
- ③ 후원회원: 단체의 설립 취지와 목적에 동의하고 단체의 목적 달성을 위해 후원에 참여하는 자.

제 6 조 <회원의 권리와 의무>

- ① 선거권을 지닌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이 단체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
- ② 정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 지니며, 정기총회에 참석할 의무가 있다.
- ③ 준회원은 선거권을 지니며, 인사규정에 따른 단체의 직위에 지원할 수 있다.
- ④ 후원회원은 이 단체가 수행하는 목적 사업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⑤ 모든 회원은 본회의 정관, 규정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회비 및 제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.

제 7 조 <회원의 탈퇴 및 제명>

-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. 단, 정회원과 준회원은 탈퇴일로부터 1주일 전에 회원 전체에게 그 사유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.
- ②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(경고), 회원 자격 정지 또는 제명할 수 있다.
 1. 본 단체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
 2.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자
 3. 사법부로부터 금고 이상의 실형을 확정받는 경우
 4. 분쟁 또는 현저한 부당·범법 행위

제 8 조 <임원의 구성>

이 단체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- ① 대표자(정회원)
- ② 운영위원(정회원)
- ③ 감사(정회원)

제 9 조 <임원의 선임>

- ① 대표자는 제 15 조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.
- ② 운영위원은 제 17 조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한 자로 한다.
- ③ 감사는 제 17 조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한다.
- ④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.

제 10 조 <임원의 해임>

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.

1. 이 단체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
2. 임원 간의 분쟁·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·범법 행위
3. 이 단체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
제 11 조 <임원의 임기>

-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.
- ②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 12 조 <임원의 직무>

- ① 대표자는 이 단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. 대표자 유고 시에는 운영위원회가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②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이 단체의 주요 사항을 심의, 의결하며 운영위원회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- ③ 감사는 일반회계 및 운영에 대해 감사하며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 보고를 위하여 운영위원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 3장 운영위원회 및 총회

제 13 조 <운영위원회의 구성>

- ① 운영위원회는 대표자와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② 감사는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
제 14 조 <운영위원회의 소집>

- ① 운영위원회는 정기운영회의 및 임시운영회의로 구분하며 대표가 소집한다.
- ② 정기운영회의는 분기별 1 회 소집하며 임시운영회의는 대표, 감사 또는 재적임원 1/3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.

제 15 조 <운영위원회 의결정족수>

운영위원회는 재적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심의한 내용을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16 조 <총회>

- ① 총회는 최고 의결기구로 선거권을 지닌 전체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대표가 소집한다. 정책규정집 별지 제 1호의 1서식
- ② 정기총회는 매년 1 회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대표 또는 감사 및 재적회원 1/3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.
- ③ 대표자는 총회 소집 시 안건, 일시,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7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.

제 17 조 <총회 의결정족수>

- ① 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의 출석으로 개최되며 출석회원 2/3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② 총회 의결권은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총회 시작 전까지 의장에게 구두 혹은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.

제 18 조 <총회의 의결사항>

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, 의결한다.

1. 임원의 선출과 해임
2. 단체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
3. 기본재산의 취득, 처분 및 자금 차입에 관한 사항
4. 예산 및 결산의 승인
5. 사업 계획의 승인
6. 기타 중요사항

제 19 조 <회의록>

운영위원회 및 총회의 의사 진행 경과와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해야 하며 의장과 참여 임원이 기명날인한다. 정책규정집 별지 제1호의 2 서식

제 4 장 사무국**제 20 조 <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>**

- ① 이 단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필요한 조직의 각 부서는 사무국 규정과 조직규정으로 정한다.
- ② 종사자의 임면에 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별도의 사무국 규정과 인사규정을 두어 정한다.

제 5 장 회계 및 재정**제 21 조 <재산의 구분>**

이 단체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

1. 기본재산은 이 단체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으로 한다
2. 보통재산은 그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.

제 22 조 <수입금>

이 단체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, 수익사업으로 취득한 수익금, 후원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.

제 23 조 <출자 및 용자>

이 단체의 목적 사업을 위해 총회 결의로 외부단체의 출자나 용자를 받을 수 있다.

제 24 조 <회계연도 및 보고>

- ①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.
- ② 회계 담당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3 개월 이내에 전년도 회계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.

제 6 장 보 칙**제 25 조 <규정변경>**

이 단체의 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26 조 <해산>

이 단체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회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27 조 <잔여재산의 귀속>

이 단체를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다른 비영리단체 또는 공익적 기금에 기부한다.

제 28 조 <운영규정>

이 규정 이외에 이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두어 정한다.

부 칙**제 1 조 <시행일>**

이 정관은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2023년 12월 1일

b.lab